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도시안전과)

의안번호	제 95 호
제 출 자	이인순 의원 외 8명 (2023. 02. 09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검 토	전문위원 정 진 만

1. 제안이유

성북구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 1,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·축제·체육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과 안전점검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, 성북구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 ~ 제5조)
- 다.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~ 제7조)
- 라. 재난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마. 안전관리요원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 ~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공연법」
- 나. 예산조치 : 예산에 관련된 조사 및 편성 필요
- 다. 입법예고 : 2023. 2. 09. ~ 2023. 2. 14.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서 열리는 공연·축제·체육 등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강화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전으로 총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음.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11제1항1)에 따르면 “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 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 제1항제1호2)에서 “축제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”로 명시하였으며,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9조제3항3)에서는 “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

1) 제66조의11(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2) 제73조의9(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”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. <개정 2018. 1. 18., 2020. 6. 2.>

1.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

3) 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·배치 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1. 18., 2018. 11. 27.>

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·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” 고 규정하고 있음.

- 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1,000명 이상인 지역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,
- 제정안이 ‘1,000명 미만’ 으로 법령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4)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, 본 조례안은 자치사무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안전에 관한 조치를 구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없이 안전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- 또한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300여 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‘이태원 참사’ 로 인해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,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관내 옥외행사로부터 구민의

4)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

- **안 제2조(정의)**에서는 옥외행사, 안전관리, 주최자, 주관자, 안전관리요원 등의 용어를 정의함.
- **안 제3조(적용범위)**에서는 성북구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주최, 주관하는 행사, 후원하는 행사,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에 500명 이상 1,000명 미만으로 규정.
- **안 제4조(구청장의 책무)**에서는 구청장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,
- **안 제5조(구민의 책무)**에서는 구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도록 규정
- **안 제6조(안전관리계획)**에서는 옥외행사의 안전을 위해 계획서에 일시, 장소, 주요내용, 순간 최대 관람객 등 포함하고 행사장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**안 제7조(안전점검)**부터 **안 제11조(권고사항)**까지는 실질적인 안전점검과 관련된 규정으로 행사 1일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하고,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옥외행사로 인해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주최자에게 중단을 권고할 수 있고, 완장, 모자, 어깨띠 등 식별이 가능한 복장을 착용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함.

- 본 조례안은 성북구 관내에서 500명이상 1,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성북구 주관(또는 주체) 공연·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과 「공연법」이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으로써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임.
- 성북구 주최(또는 주관)옥외행사의 안전문화를 보다 폭넓게 정착 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화·예술·체육 진흥발전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